

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8년 3월 27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
김 상 곤

교육부장관

국 무 위 원

김 영 주

고용노동부
장 관

●법률 제15525호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해당”을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를 “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취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시·도교육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 실습 지원,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·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조제1항 단서 중 “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,”을 “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,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의4제1항 중 “생명과”를 “인권 및 생명과”로 한다.

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「근로기준법」 제54조, 제65조,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,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고용노동부장관이”를 “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”로 한다.

1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

2.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
- 가. 현장실습 기간
 - 나. 현장실습 방법
 - 다. 담당자 배치
 - 라. 현장실습 수당
 - 마. 안전·보건상의 조치
 - 바.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·도교육감에게,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현장실습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

최근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,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며,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,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(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).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함(제7조제1항).

다. 시·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제7조의3 신설).

- 라.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(제9조제1항).
- 마.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(제9조제3항 신설).
- 바.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제27조제1항제2호 신설).
- 사. 과태료 부과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함(제27조제2항)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8년 3월 27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**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
장**

김 부 겸

●법률 제15526호

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

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승강기 안전관리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·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,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승강기”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(「주차장법」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.
2. “승강기부품”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.
3. “제조”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·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·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설치”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(技術圖書)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(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)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유지관리”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.

가. 주기적인 점검

나.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